

# 예산총칙

제1조 :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412,478,488	12,374,355
1. 일반회계	404,815,231	12,144,457
2. 특별회계	7,663,257	229,898
의료급여기금	955,890	28,677
주차장	5,259,999	157,800
주거환경개선사업	370,400	11,112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331,500	9,945
지하수관리	745,468	22,364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4조 :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5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1,605,971천원으로 한다.

제6조 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,6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